

시흥가온중학교 규정집

[Ⅱ.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- 제13장 학업중단 예방 규정] 신설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조항 없음	<p>13. 학업중단 예방 규정</p> <p>제1장 학업중단 숙려제</p> <p>제1조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제2조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</p> <p>제3조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「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」에 따른다.</p>	<p>초·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9조 반영으로 인한 신설</p>